

[2025년 경기남부권 새일여성인턴 모집 공고문]

가. 사업 개요

- 추진 근거 :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4조(일경험 지원)
- 인턴 대상 :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(필수)한 경력단절여성등
- 인턴 기간 : 3개월
- 지원 기준 : 1인 총액 460만원 한도(기업 400만원, 인턴 60만원)
- 인턴 근무 조건
 - ① 전일제 인턴 : 주 35시간 이상(월 183시간 / 월 1,835,490원 이상)
 - 결혼이민여성은 주 30시간 이상(월 157시간 / 월 1,574,710원 이상) 가능
 - ② 시간제 인턴 : 주 20~35시간 미만
 - * 최저임금의 110% 이상(임금기준표 참조), 4대 보험가입, 전일제와 균등대우
 - 결혼이민여성인 경우는 주 20~30시간 미만 가능
 - * '25년 최저임금 고시 : 시간급 10,030원

○ 지원금 지급 방식

구분	인턴채용지원금 (인턴기간 3개월)			고용유지장려금 (정규직 전환 후 6개월 고용유지)	고용유지장려금 (정규직 전환 후 12개월 고용유지)	인턴 1인당 총 460만원 지원
	1개월	2개월	3개월			
기업	80만원	80만원	80만원	80만원	80만원	400만원
개인	-	-	-	60만원	-	60만원

- (인턴채용지원금) 참여기업에 인턴 기간(3개월) 월 80만원 이내 산정·지급
- (고용유지장려금) 인턴 종료 후 정규직 또는 상용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기업 80만원(새일고용장려금), 개인 60만원(근속장려금), 12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기업 80만원(새일고용장려금) 지급
 - * 상용직 :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,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취업자

나. 세부 운영 방안

1) 연계 대상 기업

-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~ 1,000인 미만, 4대보험 가입 기업체(사업장)
 - * 인턴 종료 후 정규직 또는 상용직 전환채용 가능성이 높은 기업체
 - 다만, 상시근로자 수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하며, 기업은 해당 입증 자료(벤처기업확인서, 사업자등록증 등)를 제출하여야 함
 - ① 벤처기업*
 - * 『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』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은 ‘벤처기업 확인서’로 입증
 - ② 지식서비스산업 ③ 문화콘텐츠산업 ④ 혁신성장분야 업종
 - ⑤ 인턴사업 취지에 맞는 기업 발굴을 위한 자치단체의 별도 선발기준이 있는 경우 그 해당 기업(강소기업, 지역의 고용우수기업, 가족친화인증기업 등)
- 단, 아래 사업장(또는 일자리)에는 새일여성인턴 연계를 금지한다.
 - ① 소비·향락업체*, 근로자 파견업체** 및 근로자 공급업체(용역업체 등***)

- ② 파견직 근로자(재가요양보호사, 가사도우미, 아이돌봄서비스 등)
- ③ 동 사업 지원이 없더라도 취업이 용이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보육교사, 요양시설 요양보호사
- ④ 영업성 근로자 및 시간제 근로자(예, 학습지 교사, 방과후 교사)
- ⑤ 숙박·음식업종 사업체(다만, 숙박업종 중 호텔업, 휴양콘도 사업체는 신청가능하고, 음식업종 중 조리 및 판매와 직접 관계가 없는 직종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)
- ⑥ 3개월 미만의 계절적·일시적 인력 수요 사업체(계절적 농수산물 가공 업체 등)
- ⑦ 단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(보험회사, 제약회사, 물류도매업 등)
 - * 사업장 내에서 인턴을 근무시키는 경우는 연계 가능
- ⑧ 인턴자의 배우자, 4촌이내의 혈족·인척관계에 있는 자가 경영하는 사업장
- ⑨ 특정기간(감원방지기간) 내에 고용조정 이직(인위적감원) 사실이 있는 사업장
 - (최초 참여 기업) 당해 인턴연계(예정)일 전 1개월 동안 고용조정 이직을 한 경우
 - (재참여 기업) 당해 인턴연계(예정)일 전 3개월 동안 고용조정 이직을 한 경우
- ⑩ 새일여성인턴사업의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
- ⑪ 노사 분류 중인 사업장, 상습 임금 체불 사업장 등 인턴 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
- ⑫ 그 밖에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

○ 인턴지원금 관련 부정수급 등 확인 시 지원금 환수 외 5배 이하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임을 안내하고, 고지 사실에 대한 확인서 수령함

○ ‘인턴채용지원금’과 타 보조사업의 기업지원금*은 중복 지원 하지 않음

※ 청년내일채움공제, 고용촉진장려금 등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가 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

○ 기업체의 인턴 채용 제한 기준

상시근로자 수	인턴 채용 인원 수 제한 기준	비 고
1인 이상 20인 미만	상시근로자 수의 70% 이내	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처리
20인 이상 50인 미만	상시근로자 수의 50% 이내	
50인 이상	상시근로자 수의 30% 이내	

* 한 기업당 최대 30명 한도

※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 상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제한 인원기준 미적용

2) 현장 지도·점검

- (사전 통지) 새일센터는 현장 지도·점검 시 기업에 그 사유와 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, 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.
- (지도·점검 내용) 인턴 대상 근무상황 점검 및 애로사항 심층상담, 기업 대상 인턴 근로 보호 점검 및 양성평등 교육, 일·가정 양립 컨설팅 등 제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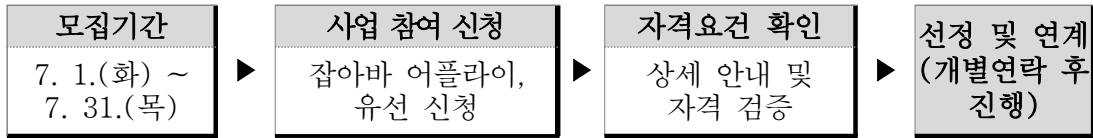
3) 지원금 반환 및 환수

- 새일센터장은 인턴 채용 기업이 인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새일여성 인턴 사업 참여 기업에서 제외할 수 있다.
- 인턴 채용 기업이 「근로기준법」을 위반하거나 허위 신청,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,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.

다. 모집기간

□ 2025. 8. 1.(금) 09:00 ~ 8. 31.(일) 18:00

라. 진행절차 ※ 운영 상황에 따라 상기 일정 및 세부 내용 등 일부 변동될 수 있음



□ 신청

○잡아바어플라이: <https://apply.jobaba.net/bsns/bsnsDetailView.do?bsnsSeq=3952>

○ 유선 신청 및 문의: 경기광역새일센터(031-270-9808)

마. 기타사항

- 온라인 접수 시 입력정보 부정확, 첨부서류 확인 등이 불가능한 경우 서류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나,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.
-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, 연락두절 등 신청자의 실수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.
- 신청 전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우선 판단한 후 접수 진행 바라며,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.
-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것으로 확인되거나 신청서, 각종 증빙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사항 일체를 취소할 수 있음.